

투자 위험 등급
6등급[매우낮은위험]

|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상 위험 | 다소 위험 | 보통 위험 | 낮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NH-Amundi 법인 MMF 5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NH-Amundi 법인 MMF 5호**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법인 MMF 5호**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37636)
 2. 집합투자업자 명칭: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4. 작성기준일: 2025년 7월 9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5년 9월 1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수익증권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본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을 내리기 전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로서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60 조 제 3 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규약 제 17 조제 5 항에 따른 안정적 자산 비중이 3 영업일 연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하인 경우나 시가로 평가했을 때의 기준가격과 괴리율이 1,000 분의 5 이상 넘어갈 경우,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 하여야 합니다.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투자기간이 짧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은 반면, 시가에 따라 편입자산을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금리 및 수급 등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5.07.09)

NH-Amundi 법인MMF 5호 (펀드 코드 : 37636)

| 투자 위험 등급 6등급[매우낮은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NH-Amundi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단기채권 위주로 투자하여 주식 혹은 신용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금리(이자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NH-Amundi법인MMF5호'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 | | | |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고객만으로 이루어진 법인전용 MMF입니다. 신탁재산을 잔존만기가 짧은 채권 등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 | | | | | | | | | |
| 분류 | 투자신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 | | | | | | | | | |
|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 | | |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 천원) | | | | | |
| |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투자신탁 | 없음 | 0.11 | 0.05 | - | 0.1145 | 12 | 24 | 37 | 65 | 148 |
| |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7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 | | | | | | | | |
|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종류 | 최초 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
| | | | 24.07.10 ~ 25.07.09 | 23.07.10 ~ 25.07.09 | 22.07.10 ~ 25.07.09 | 20.07.10 ~ 25.07.09 | | | | | |
| | 투자신탁(%) | 2003-07-09 | 3.28 | 3.62 | 3.64 | 2.62 | 2.91 | | | | |
| | 비교지수 (%) | | 3.11 | 3.36 | 3.30 | 2.29 | 2.62 | | | | |
| 수익률 변동성(%) | 0.04 | | 0.06 | 0.06 | 0.18 | 0.41 | | | | | |
| | (주 1) 비교지수 : (1 * [CALL금리])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 | | | | | | |

운용전문인력
(25.07.09 기준)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개,억원)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MMF, %)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1년 | 최근 2년 | |
| 최흥근 | 1979 | 책임 (팀장) | 4 | 53,680 | 3.28 | 3.60 | 3.26 | 3.54 | 16년 11개월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MMF팀에서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운용전문인력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담당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60 조 제 3 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규약 제 17 조제 5 항에 따른 안정적 자산 비중이 3 영업일 연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나 시가로 평가했을 때의 기준가격과 괴리율이 1,000분의 5 이상 넘어갈 경우,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 하여야 합니다.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투자기간이 짧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은 반면, 시가에 따라 편입자산을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금리 및 수급 등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적인 투자자유의 사항은 투자설명서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원본 손실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NH-Amundi 법인MMF 5호

| | | | |
|------------|--|--|--|
| |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위험 |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 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 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 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위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 및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 | 평가위험 (과리율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장부가 평가를 기본으로 합니다. 장부가 평가 금액과 시가 평가 금액의 차이(과리율)에 따라 시가평가로 전환될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 부분(미실현부분)이 실현되어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이 일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요청 등에 따른 보유 채권의 매각시 미실현 손실(과리율)이 실현되어 집합투자기구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
| | 시가평가로 전환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60 조 제 3 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계약 제 17 조제 5 항에 따른 안정적 자산 비중이 3 영업일 연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하인 경우나 시가로 평가했을 때의 기준가격과 과리율이 1,000 분의 5 이상 넘어갈 경우,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 하여야 합니다.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투자기간이 짧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은 반면, 시가에 따라 편입자산을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금리 및 수급 등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매입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시 이전: 2 영업일 기준가 매입 17시 경과 후: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 환매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시 이전: 2 영업일 기준가 2 영업일 지급 17시 경과 후: 3 영업일 기준가 3 영업일 지급 |
| 환매수수료 | - 해당사항 없음 - | | |
| 기준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일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매일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전자 공시 | | |
| 과세 | 구분 | 과세의 주요 내용 |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 전환절차 및 방법 | - 해당사항 없음 - | | |
| 집합투자업자 | NH-Amundi 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nh-amundi.com) | | |
|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가능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총액에 제한 없음 |
| 효력발생일 | 2025년 9월 11일 | 존속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주요업무),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40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 해당사항 없음-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nh-amundi.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nh-amundi.com)

- 목차(目次)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 펀드코드 |
| NH-Amundi 법인MMF5호 | 37636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 | |
|-----------------|------------------|---|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 다. 개방형, 폐쇄형 구분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 라. 추가형, 단위형 구분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 마. 특수형태 | 해당없음 | |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 투자신탁으로 모집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모집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판매) 규모 및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영업점

※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펀드코드 |
|-------------------|-------|
| NH-Amundi 법인MMF5호 | 37636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일 시 | 주요내용 |
|------------|--|
| 2003.07.09 | 최초설정 |
| 2004.07.05 | 적용 법규가 과거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변경 |
| 2005.06.07 | Late Trading 이 적용되어 17 시 이후에 설정,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이 다르게 적용 |
| 2005.11.21 | 환매시 미래가격 적용 시행 |
| 2006.07.01 | 매입(설정)시 미래가격 적용 시행 |
| 2007.02.01 | 수탁회사 및 판매 보수 변경 |
| 2009.05.04 | 적용 법규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 "농협 CA 법인 MMF5 호"에서 "NH-CA 법인 MMF5 호"로 명칭 변경 |
| 2009.10.06 | 시행령 등 개정으로 인한 투자대상 및 운용제한 정정 |
| 2009.12.18 | 투자신탁의 보수 변경(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
| 2010.09.16 |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
| 2011.08.03 |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
| 2012.10.02 |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
| 2013.07.09 |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
| 2013.07.17 | 오기정정 |
| 2014.11.06 |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
| 2016.03.30 |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
| 2016.05.03 |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NH-CA 법인 MMF5 호 →NH-Amundi 법인 MMF5 호 |
|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
| 2016.09.20 |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
| 2017.09.13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0.06% → 0.05%, 6등급 유지) 자구정정 및 보완 |
| 2017.11.16 | 보수율 변경 (단, 총보수율 동일) 작성일 기준 운용실적 등 갱신 |
| 2018.08.31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0.05% → 0.01%, 6등급 유지) |
| 2019.09.04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 | |
|------------|---|
|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0.01% → 0.03%, 6등급 유지) |
| 2019.09.16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 반영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에 따른 변경 |
| 2020.08.25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0.03% → 0.02%, 6등급 유지) |
| 2021.05.12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도형 → 최홍근) |
| 2021.09.09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0.02% → 0.06%, 6등급 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21.05.07) 반영 |
| 2022.09.08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0.06% → 0.05%, 6등급 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금전차입 제한 예외 조항 추가 등)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생내역 추가 적용 법률 변경, 용어 및 문구 변경 등 (재무상태표 등) |
| 2023.04.01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2022.04.01시행 2023.04.01 적용분) |
| 2023.09.08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0.05% → 0.18%, 6 등급 유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23.02.20시행) 반영 |
| 2024.09.06 |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표준편차 → 최대손실예상액) 반영(표준편차 기준 0.18% → 97.5 VaR 기준 0.00%, 6등급 유지) - 모집(매출) 총액 정정(10조좌→제한없음)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24.03.01시행) 반영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2024.01.25) 반영 |
| 2025.09.11 |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변동성(최대손실예상액) 변경사항 반영 (0.00% → 0.00%, 6등급 유지) - 채권평가회사 추가(이지자산평가)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이란 투자신탁의 존속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투자자의 "저축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1) 집합투자업자

| | |
|----------|--|
| 회사명 | NH-Amundi 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2 (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10 층) |

| | |
|--|---------------------------------------|
| | (Tel. 02-368-3600, www.nh-amundi.com) |
|--|---------------------------------------|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1) 운용전문인력 (2025.07.09 기준)

| 책임운용전문인력 | | | | | |
|---|------|----|----------|--------------------|-----------|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 경력년수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개) | 운용규모 (억원) |
| 최홍근 | 1979 | 팀장 | 16년 11개월 | - | - |
| | |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
| - 2018.06~현재 NH-Amundi 자산운용 채권솔루션본부 MMF 팀 - 2015.08~2018.06 IBK 투자증권 채권운용팀 - 2012.09~2015.08 LIG 투자증권 채권금융팀 - 2008.08~2012.08 국민은행 상품채권팀 | | | | | |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MMF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운용전문인력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담당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주5)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5.07.09 기준)

| 성명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MMF) |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개) | 운용규모 (억원좌)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최홍근 | 4 | 53,680 | 3.28 | 3.60 | 3.26 | 3.54 |

- 주1)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기구 분류상 2차, 3차 분류기준)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팀운용이지만,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상기 책임운용인력이 운용한 펀드의 평균운용성과를 기재하였습니다.

(3)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일시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주2)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개방형, 추가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법인전용 MMF 입니다. 신탁재산을 잔존만기가 짧은 채권 등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금융시장에서 단기로 거래되는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함에 따른 가격의 변동위험 및 발행인의 부도, 채무불이행, 파산 등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채무증권(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운용합니다.

※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 투자대상의 종류 | 투자대상 조건 |
|--|--|
| ①채권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사채권(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채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 ②어음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합니다.) |
| ③양도성 예금증서 |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
| ④법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 ⑤수익증권 등 |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 ⑥환매조건부매도 및 매수 |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이하 |
| ⑦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
| ⑧법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 | 만기 6월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 | |
|---|--|
| <p>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예 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예의 예치</p> | |
| <p>⑨ 단기사채 등</p> | |
| <p>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무증권(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을 잔존만기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양도성 예금증서, 정기예금 나.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 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예의 예치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기 (1)의 제1호부터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상기 (1)의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 3. 상기 (1)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3)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하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신탁계약서 제29조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금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3. 양도성 예금증서 4.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예의 예치 5.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6. 신탁계약서 제1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매수. 다만, | |

환매조건부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9조제1항제3호 나목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7.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주)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투자제한 사항 |
|-------------------------------|---|
| <p>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p> |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p> <p>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p> |
| <p>② 동일종목 투자 제한</p> | <p>1.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1-2. 이 투자신탁재산을 채무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가. 채무증권 : 자산총액의 5%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p> |

| | |
|--------------------------|--|
| | <p>서"라 한다)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p> <p>나. 어음 : 자산총액의 3%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로 한다.)</p> <p>다.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다만, 최상의 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0.5%). 이 경우 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2.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p> <p>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p> <p>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p> <p>(1) 만기 30일 이내일 것</p> <p>(2)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p> <p>(3)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 등급의 채무증권일 것</p> <p>다. 각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p> |
| <p>③ 환매조건부매도 제한</p> | <p>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p> |
| <p>④ 증권 대여 및 차입 제한</p> | <p>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행위</p> |
| <p>⑤ 수익증권 투자제한</p> |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행위</p> |
| <p>⑥ 파생상품 투자제한</p> | <p>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행위</p> |
| <p>⑦ 기타 투자제한 자산 및 행위</p> | <p>1.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p> <p>가. 법제4조제4항의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및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이와 성질이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법제4조제3항의 채무증권 중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및 사채권(이와 성질이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예탁증권, 법제110조제1항에 의한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p> |

| | |
|-------------------|---|
| | <p>의한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외국의 집합투자업자(외국의 집합투자업관계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집합투자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또는 외화로 표시된 자산</p> <p>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증권</p> <p>다. 주식관련 사채 및 사모사채</p> <p>라.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 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p> <p>마. 위의 "라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p> <p>2.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남은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하는 양도성 예금증서에 투자하는 행위</p> <p>3.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60일을 초과하는 행위</p> <p>4. 이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p>5.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p> |
| <p>⑧금전의 차입 제한</p> | <p>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p> <p>가. 법제235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나. 법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다.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p> <p>2. 상기 1호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p> <p>3. 상기 1호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p> |
| <p>⑨금전의 대여 제한</p> |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시행령제 345 조제 1 항 각</p> |

| | |
|---|---|
| | <p>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습니다.</p> |
| <p>⑩채무보증 및 담보제공</p> |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p> |
| <p>⑪신용평가등급의 제한 등</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2개등급"이라 한다)이내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합니다. 2. 상기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나.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다.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상기 2호 '가'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합니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상기 2호 '나' 및 '다'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 <p><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제한 '⑤수익증권 투자제한'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2. 상기 투자제한 '②동일종목 투자'의 제 2 호 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성을 추구하고 적절한 현금 보유로 안정성을 추구함.

※단기금융상품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어음 (기업어음증권 제외)
- 4) 법 제 84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제 79 조 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 관서예의 예치
- 6)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위험관리

당사 내부규정에 따른 신용평가등급 관리, 펀드의 듀레이션 관리, 유동성 관리 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듀레이션 관리: 법규 허용 범위 내에서 정기적인 투자전략위원회 통해 목표 듀레이션 관리
- 신용등급 관리: 크레딧리서치팀의 유니버스 관리
- 유동성 관리: 정기에금 비율, 유동화자산 비율, 괴리율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팀의 모니터링

(3)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

- Call Rate 100%
- Call Rate: 금융기관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이라 하며, 이때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 합니다.
-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잔존만기가 짧은 채권에 운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동성 자산 등에 운용하는 이 투자신탁의 속성을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된 비교지수(벤치마크)와 변경 사유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4) 적극적인 매매전략의 구사여부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만큼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주된 운용전략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계획은 이 투자신탁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법시행령 제 260 조제 3 항에

의하여 장부가격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시가평가되는 다른 유형의 증권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지닙니다. 그러나, 집합투자재산의 장부가 평가금액과 시가평가 금액의 차이(괴리율)가 일정범위를 벗어 날 경우, 집합투자재산을 시가평가하게 되며,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이 일시에 반영되어 급격한 가치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증가에 따라 만기 전 보유채권을 매각할 경우, 장부가격으로 평가되던 채권이 시가로 매각됨에 따라서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을 판매하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원본 손실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경제여건 및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

| | |
|-------------------------|--|
| 시장현황 위험 |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 및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평가위험 (과리율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장부가 평가를 기본으로 합니다. 장부가 평가 금액과 시가 평가 금액의 차이(과리율)에 따라 시가평가로 전환될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 부분(미실현부분)이 실현되어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이 일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요청 등에 따른 보유 채권의 매각시 미실현 손실(과리율)이 실현되어 집합투자기구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 시가평가로 전환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나 시가로 평가했을 때의 기준가격과 과리율이 1,000분의 5 이상 넘어갈 경우,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 하여야 합니다.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투자기간이 짧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은 반면, 시가에 따라 편입자산을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금리 및 수급 등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 위험 |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되거나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 해지 위험 |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의 해지)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 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특히, 상기 3, 4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의무 해지)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

제외.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시장위험(VaR)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최대손실예상액(VaR)은 **0.00%**로 시장위험 등급기준에 따라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낮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

| 변경일 | 변경 위험등급 | 변경사유 |
|------------|-----------|--|
| 2016.07.02 | 5등급 → 6등급 |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5단계 → 6단계)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0.5%이하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최대손실예상액(VaR) 기준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 등급 | 1등급 (매우높은위험) | 2등급 (높은위험) | 3등급 (다소높은위험) | 4등급 (보통위험) | 5등급 (낮은위험) | 6등급 (매우낮은위험) |
|-----------|-----------------|---------------|-----------------|---------------|---------------|-----------------|
| 97.5% VaR | 50% 초과 | 50% 이하 | 30% 이하 | 20% 이하 | 10% 이하 | 1% 이하 |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상기 투자위험등급은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매결산시마다 최대손실예상액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에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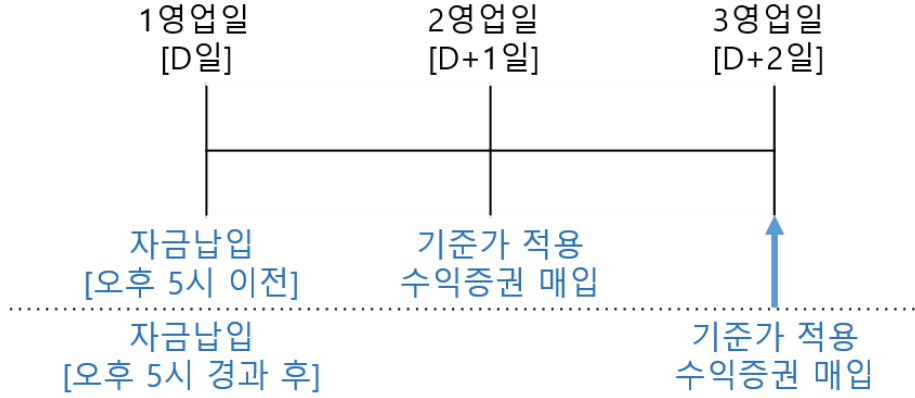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 일)의 다음 영업일(D+1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 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3)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 구분 | 중도환매 불가 |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 중도환매 허용 |
|-----------------------|---------|------------|---------|
|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 - | - | ○ |

※ 환매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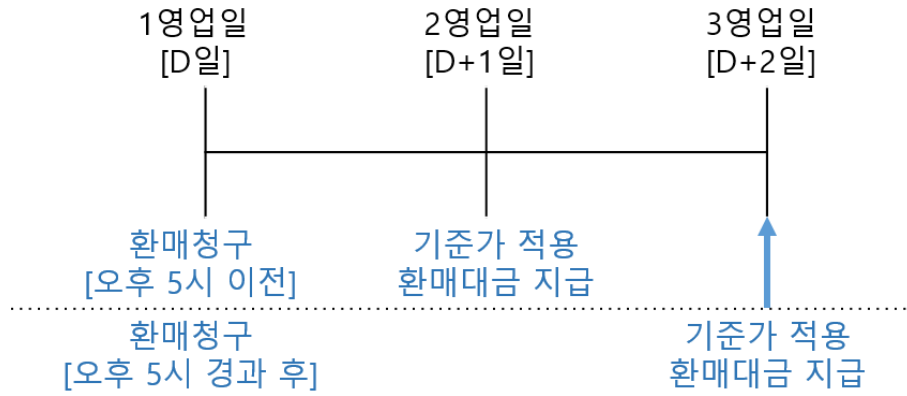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2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3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투자신탁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 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아님에 따라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 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산정주기 | 매일 산정합니다. |
| 공시주기 | 매영업일 공시합니다. |
| 공시방법 및 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또는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
-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상장증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
| 장내파생상품 및 해외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
| 채무증권 |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관련법령에 따라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자가 제공한 가격 (1) 채권평가회사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3) 신용평가업자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5)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6) (1)~(5)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7) (1)~(6)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4)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 ①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상기의 평가기준과 별도로 다음과 같이 “장부가격”으로 평가됩니다.
-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 *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1. 신탁계약서 제 17 조제 5 항에 따른 안정적 자산 비중이 3 영업일 연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하인 경우
- ③ 제 2 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라 장부가격으로 평가한다.
 - 1. 직전 10 영업일 이내에 일시적·일회적 대량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하여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 2.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내 안정적 자산의 비중 감소, 장부가격과 시가의 괴리율 확대 및 선(先)환매유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④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과 그렇지 않은 방법(3)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1,000 분의 5 의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서 제 29 조제 2 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5)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격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7-36 조제 1 항제 2 호 각 목의 자산비율이 100 분의 30 을 초과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격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방안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 자산비중(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⑥ 제 5 항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방안, 평가방법 변경(시가평가),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분 |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 부과시기 |
|---------|----------------|------|
| 선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 매입시 |
| 후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 환매시 |
| 전환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 전환시 |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 환매시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0400 |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
| 판매회사보수 | 0.0500 | |
| 신탁업자보수 | 0.0120 |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0.0080 | |
| 총보수 | 0.1100 | |
| 기타비용 | <u>0.0045</u> | 사유 발생시 |
| 총보수·비용 | <u>0.1145</u> | - |
| 동종유형총보수 | = | - |
| 증권 거래비용 | <u>0.0060</u> |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며,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상기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한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 중 가장 큰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7.09 ~ 2025.07.08]

주2)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구성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내역 (단위: 천원) |
|--------|--|-----------------------------|
| 증권거래비용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Repo·콜·대차 또는 대주·현금 등 중개수수료 등 (다만,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 수수료 계약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환급되는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u>114,072</u> |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 등 | - |

- 상기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한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 중 가장 큰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7.09 ~ 2025.07.08]

- 상기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7.09 ~ 2025.07.08]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전전월말 기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 구분 | 1 년후 | 2 년후 | 3 년후 | 5 년후 | 10 년후 |
|--------|------|------|------|------|-------|
| 총보수·비용 | 12 | 24 | 37 | 65 | 148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8%, 주민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 22기(2024.07.09 - 2025.07.08) | 삼화회계법인 | 적정 |
| 제 21기(2023.07.09 - 2024.07.08) | 예일회계법인 | 적정 |
| 제 20기(2022.07.09 - 2023.07.08) | 예일회계법인 | 적정 |

가. 요약재무정보

NH-Amundi 법인MMF5호

[단위 : 원]

| 재무상태표 | | | |
|----------|-------------------|-------------------|-------------------|
| 항 목 | 제 22기 | 제 21기 | 제 20기 |
| | (2025.07.08) | (2024.07.08) | (2023.07.08) |
| 운용자산 | 1,423,124,664,160 | 1,655,264,272,950 | 1,221,165,221,755 |
| 증권 | 1,373,166,931,373 | 1,654,908,696,361 | 1,190,777,515,416 |
| 파생상품 | 0 | 0 | 0 |
| 부동산/실물자산 | 0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49,957,732,787 | 355,576,589 | 30,387,706,339 |
| 기타 운용자산 | 0 | 0 | 0 |
| 기타자산 | 6,282,318,294 | 10,103,055,777 | 8,859,405,216 |
| 자산총계 | 1,429,406,982,454 | 1,665,367,328,727 | 1,230,024,626,971 |
| 운용부채 | 0 | 0 | 0 |
| 기타부채 | 219,163,847 | 261,240,749 | 253,265,576 |
| 부채총계 | 219,163,847 | 261,240,749 | 253,265,576 |
| 원본 | 1,383,709,865,340 | 1,601,676,905,633 | 1,185,995,663,995 |
| 수익조정금 | -16,310,759,048 | -6,644,479,306 | -27,947,786,221 |
| 이익잉여금 | 61,788,712,315 | 70,073,661,651 | 71,723,483,621 |
| 자본총계 | 1,429,187,818,607 | 1,665,106,087,978 | 1,229,771,361,395 |

NH-Amundi 법인MMF 5호

NH-Amundi 법인MMF5호

[단위 : 원, %]

| 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제 22기 | 제 21기 | 제 20기 |
| | (2024.07.09 - 2025.07.08) | (2023.07.09 - 2024.07.08) | (2022.07.09 - 2023.07.08) |
| 운용수익 | 64,073,978,495 | 72,246,682,119 | 74,073,118,664 |
| 이자수익 | 63,447,440,906 | 71,860,303,938 | 73,074,803,478 |
| 배당수익 | 0 | 0 | 0 |
| 매매/평가차익(손) | 626,537,589 | 386,378,181 | 998,315,186 |
| 기타수익 | 0 | 0 | 0 |
| 운용비용 | 2,285,266,180 | 2,173,020,468 | 2,349,635,043 |
| 관련회사 보수 | 1,935,701,453 | 1,846,679,780 | 2,002,922,178 |
| 매매수수료 | 0 | 0 | 0 |
| 기타비용 | 349,564,727 | 326,340,688 | 346,712,865 |
| 당기순이익 | 61,788,712,315 | 70,073,661,651 | 71,723,483,621 |
| 매매회전율 | 0.00 | 0.00 | 0.00 |

-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주 2) "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公示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5)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발생내역 없음)
- (주 6)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발생내역 없음)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NH-Amundi 법인MMF5호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2024.07.09 - 2025.07.08) | | | 전기(2023.07.09 - 2024.07.08) | | |
|-----------------|-------------------------------|-------|--------------|-------------------------------|-------|--------------|
| | 거래 금액(A) | 거래비용 | | 거래 금액(A) | 거래비용 | |
|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B/A)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B/A) |
| 주식 | | | | | | |
|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 | | | | | |
| 부동산 | |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 72,474,300 | 114 | 0.0002 | 84,590,300 | 113 | 0.0001 |
| 합계 | 72,474,300 | 114 | 0.0002 | 84,590,300 | 113 | 0.0001 |

-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NH-Amundi 법인MMF 5호

<주식의 매매회전율>

NH-Amundi 법인MMF5호

(단위: 주, 백만원, %)

| 주식 매수 | | 주식 매도 | |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 매매회전율(A/B) |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A) | | | |
| 0 | 0 | 0 | 0 | 0 | 0 | 31.98 |

(주 1)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기준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 90 조제 1 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분기영업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분기별 누적 평균 매매회전율을 공시한 자료입니다.

나. 재무상태표

투자신탁명 :

NH-Amundi 법인MMF5호

[단위:원]

| 과 목 | 제22기(2025.07.08) | | 제21기(2024.07.08) | | 제20기(2023.07.08) | |
|---------------------------------|--------------------|-------------------|--------------------|-------------------|--------------------|-------------------|
| | 금 | 액 | 금 | 액 | 금 | 액 |
| 자 산 | | | | | | |
| 운 용 자 산 | | | | | | |
| 현금및예치금 | | 49,957,732,787 | | 355,576,589 | | 30,387,706,339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359,086,061 | | 355,576,589 | | 387,706,339 | |
| 2. 예치금 | 49,598,646,726 | | | | 30,000,000,000 | |
| 3. 증거금 | | | | | | |
| 대출채권 | | 1,104,793,856,019 | | 1,341,323,604,187 | | 1,048,358,301,036 |
| 1. 콜론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254,800,000,000 | | 331,700,000,000 | | 253,500,000,000 | |
| 3. 매입어음 | 849,993,856,019 | | 1,009,623,604,187 | | 794,858,301,036 | |
| 4. 대출금 | | | | | | |
| 유가증권 | | 268,373,075,354 | | 313,585,092,174 | | 142,419,214,380 |
| 1. 지분증권 | | | | | | |
| 2. 채무증권 | 268,373,075,354 | | 313,585,092,174 | | 142,419,214,380 | |
| 3. 수익증권 | | | | | | |
| 4. 기타유가증권 | | | | | | |
| 파생상품 | | | | | | |
| 1. 파생상품 | | | | | | |
| 부동산과 실물자산 | | | | | | |
| 1. 건물 | | | | | | |
| 2. 토지 | | | | | | |
| 3. 농산물 | | | | | | |
| 4. 축산물 | | | | | | |
| 기타운용자산 | | | | | | |
| 1. 임차권 | | | | | | |
| 2. 전세권 | | | | | | |
| 기 타 자 산 | | 6,282,318,294 | | 10,103,055,777 | | 8,859,405,216 |
|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 | | | | |
| 2. 정산미수금 | | | | | | |
| 3. 미수이자 | 6,282,318,294 | | 10,103,055,777 | | 8,859,405,216 | |
| 4. 미수배당금 | | | | | | |
| 5. 기타미수입금 | | | | | | |
| 6. 기타자산 | | | | | | |
| 7. 수익증권청약금 | | | | | | |
| 자 산 총 계 | | 1,429,406,982,454 | | 1,665,367,328,727 | | 1,230,024,626,971 |
| 부 채 | | | | | | |
| 운 용 부 채 | | | | | | |
| 1. 옵션매도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 | | |
| 기 타 부 채 | | 219,163,847 | | 261,240,749 | | 253,265,576 |
|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 | | | | | |
| 2. 정산미지급금 | | | | | | |
| 3. 해지미지급금 | | | | | | |
| 4. 수수료미지급금 | 219,163,847 | | 261,240,749 | | 253,265,576 | |
| 5. 기타미지급금 | | | | | | |
| 6. 기타부채 | | | | | | |
| 부 채 총 계 | | 219,163,847 | | 261,240,749 | | 253,265,576 |
| 자 본 | | | | | | |
| 1. 원 본 | 1,383,709,865,340 | | 1,601,676,905,633 | | 1,185,995,663,995 | |
|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 | | | | | |
| 3. 이월잉여금 | 45,477,953,267 | | 63,429,182,345 | | 43,775,697,400 | |
| (발행좌수 당기: 1,383,709,865,340 좌 | | 61,788,712,315 | | 70,073,661,651 | | 71,723,483,621 |
| (발행좌수 전기: 1,601,676,905,633 좌 | | -16,310,759,048 | | -6,644,479,306 | | -27,947,786,221 |
| (발행좌수 전전기: 1,185,995,663,995 좌) | | | | | | |
|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 | | | | | |
| (기준가격 전기: 1,000.00 원 | | | | | | |
| (기준가격 전전기: 1,000.00 원) | | | | | | |
| 자 본 총 계 | | 1,429,187,818,607 | | 1,665,106,087,978 | | 1,229,771,361,395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1,429,406,982,454 | | 1,665,367,328,727 | | 1,230,024,626,971 |

다. 손익계산서

투자신탁명 :

NH-Amundi 법인MMF5호

[단위:원]

| 과 목 | 제22기(2024.07.09-2025.07.08) | | 제21기(2023.07.09-2024.07.08) | | 제20기(2022.07.09-2023.07.08) | |
|-------------------|-------------------------------|----------------|-------------------------------|----------------|-------------------------------|----------------|
| | 금 액 | | 금 액 | | 금 액 | |
| 운 용 수 익 | | | | | | |
| 1. 투자수익 | | 63,447,440,906 | | 71,860,303,938 | | 73,074,803,478 |
| 1. 이 자 수 익 | 63,447,440,906 | | 71,860,303,938 | | 73,074,803,478 | |
| 2. 배당금수익 | | | | | | |
| 3. 수수료수익 | | | | | | |
| 4. 임대료수익 | | | | | | |
|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 864,088,442 | | 646,675,186 | | 1,235,369,446 |
| 1. 지분증권매매차익 | | | |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 28,320,235 | | 62,713,989 | | 290,408,672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익 | | | | | | |
| 5. 외환거래/평가차익 | | | | | | |
|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 835,768,207 | | 583,961,197 | | 634,450,176 | |
| 7. 기타거래차익 | | | | | 310,510,598 | |
|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 237,550,853 | | 260,297,005 | | 237,054,260 |
| 1. 지분증권매매차손 | | | |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 13,980,162 | | 28,852,037 | | 50,840,286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손 | | | | | | |
| 5. 외환거래/평가차손 | | | | | | |
| 6. 대손상각비 | | | | | | |
|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 223,570,691 | | 231,444,968 | | 186,213,974 | |
| 8. 기타거래손실 | | | | | | |
| 운 용 비 용 | | 2,285,266,180 | | 2,173,020,468 | | 2,349,635,043 |
| 1. 운용수수료 | 759,097,742 | | 724,187,341 | | 785,458,794 | |
| 2. 판매수수료 | 948,873,308 | | 905,235,202 | | 981,824,574 | |
| 3. 수탁수수료 | 227,730,403 | | 217,257,237 | | 235,638,810 | |
| 4. 투자자문수수료 | | | | | | |
| 5. 임대자산관련비용 | | | | | | |
| 6. 기타비용 | 349,564,727 | | 326,340,688 | | 346,712,865 |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61,788,712,315 | | 70,073,661,651 | | 71,723,483,621 |
|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 | 0.044654384 | | 0.043750185 | | 0.060475334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NH-Amundi 법인MMF5호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설정(발행) | | 환매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
| 2024.07.09 - 2025.07.08 | 16,017 | 16,017 | 148,586 | 150,983 | 150,765 | 153,326 | 13,837 | 14,292 |
| 2023.07.09 - 2024.07.08 | 11,860 | 11,860 | 136,912 | 139,906 | 132,755 | 135,815 | 16,017 | 16,651 |
| 2022.07.09 - 2023.07.08 | 14,662 | 14,662 | 118,729 | 120,553 | 121,530 | 123,634 | 11,860 | 12,298 |

(주1) 2024.07.09 - 2025.07.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3,588,933,696좌/43,588,933,696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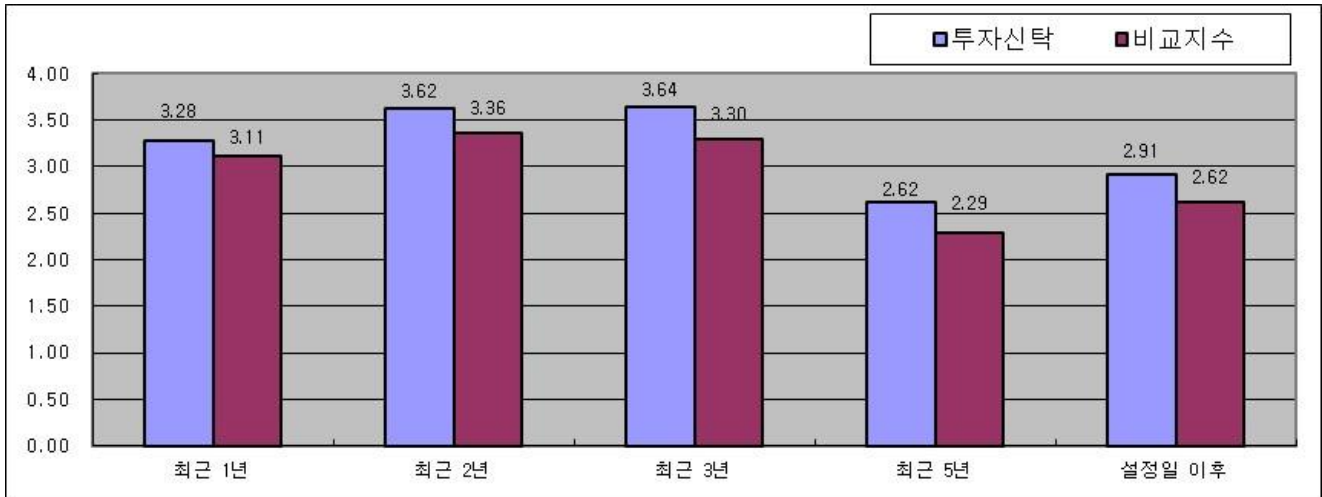
(주2) 2023.07.09 - 2024.07.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0,863,781,397좌/60,863,781,397원

(주3) 2022.07.09 - 2023.07.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9,330,402,238좌/39,334,590,990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 기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 24.07.10 ~ 25.07.09 | 23.07.10 ~ 25.07.09 | 22.07.10 ~ 25.07.09 | 20.07.10 ~ 25.07.09 |
| 투자신탁 | 3.28 | 3.62 | 3.64 | 2.62 | 2.91 |
| 비교지수 | 3.11 | 3.36 | 3.30 | 2.29 | 2.62 |
| 수익률변동성(%) | 0.04 | 0.06 | 0.06 | 0.18 | 0.41 |

(주 1) 비교지수 : (1 * [CALL 금리])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이며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기간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 | 24.07.10 ~ 25.07.09 | 23.07.10 ~ 24.07.09 | 22.07.10 ~ 23.07.09 | 21.07.10 ~ 22.07.09 |
| 투자신탁 | 3.28 | 3.95 | 3.70 | 1.38 | 0.84 |
| 비교지수 | 3.11 | 3.61 | 3.17 | 1.10 | 0.50 |

(주 1) 비교지수 : (1 * [CALL 금리])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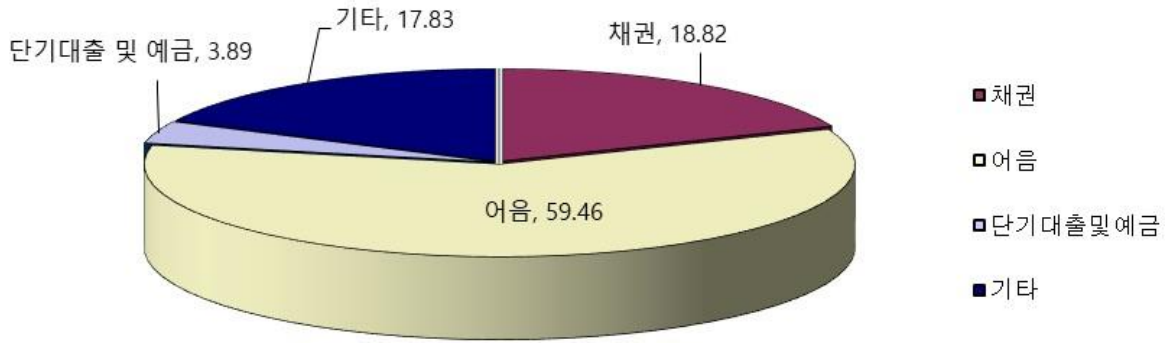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 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 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상기의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결정을 내리기 전에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5.07.08 현재 / 단위 : 억원, %]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KRW | 0 | 2,690 | 8,500 | 0 | 0 | 0 | 0 | 0 | 0 | 555 | 2,548 | 14,294 |
| | (0.00) | (18.82) | (59.46)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3.89) | (17.83) | (100.00) |
| 합계 | 0 | 2,690 | 8,500 | 0 | 0 | 0 | 0 | 0 | 0 | 555 | 2,548 | 14,294 |
| | (0.00) | (18.82) | (59.46)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3.89) | (17.83) | (100.00) |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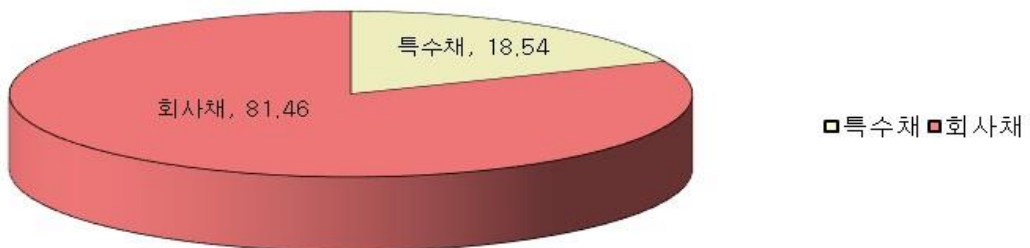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라.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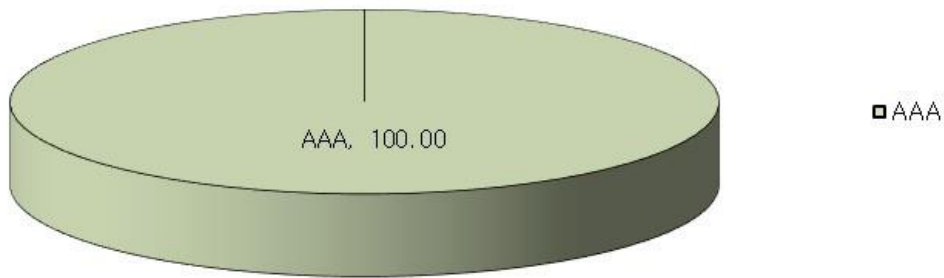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2025.07.08 현재 / 단위 : 억원,%]

| 구분 | 채권종류 | | | | | | 합 계 |
|-------|--------|--------|---------|--------|--------|---------|----------|
| | 국채 | 지방채 | 특수채 | 금융채 | 통화채 | 회사채 | |
| 금액/비중 | 0 | 0 | 499 | 0 | 0 | 2,192 | 2,690 |
| | (0.00) | (0.00) | (18.54) | (0.00) | (0.00) | (81.46) | (100.00) |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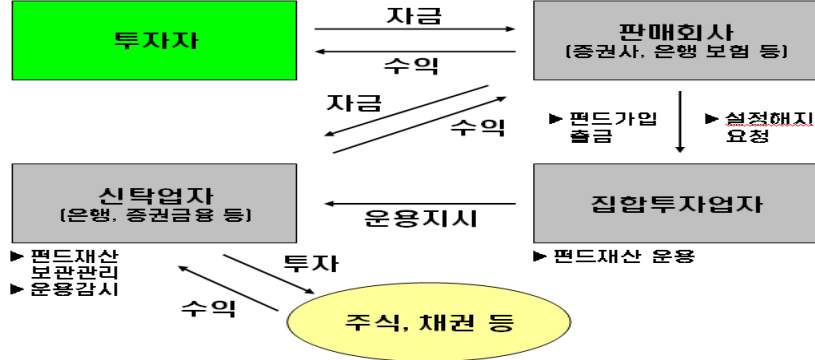
[2025.07.08 현재 / 단위 : 억원,%]

| 구분 | 신용평가등급 | | | | | | | | | 합 계 |
|-------|--------|----------|--------|--------|--------|--------|--------|----------|--------|----------|
| | RF | AAA | AA-이상 | A-이상 | BBB-이상 | BB-이상 | B-이상 | C,CC,CCC | 무등급 | |
| 금액/비중 | 0 | 2,690 | 0 | 0 | 0 | 0 | 0 | 0 | 0 | 2,690 |
| | (0.00) | (10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100.00) |

- 3)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 4)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 5)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 6)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 7)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 회사명 | NH-Amundi자산운용(주) |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 (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10층) 연락처 : 02-368-3600 (www.nh-amundi.com) | |
| 회사연혁 | 2002.04 | 농협과 CAAM간 자산운용회사 설립에 관한 MOU체결 |
| | 2003.01 | NH농협금융지주와 Amundi의 합작법인 설립 ※ Amundi : 프랑스 크레디아그리폴(CA) 금융그룹의 자산운용 자회사, 2010. 01 CAAM에서 Amundi로 사명 변경 |
| | 2003.03 |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금융감독위원회) |
| | 2003.04 | 영업개시 및 첫 펀드 설정 |
| | 2006.09 | 국내 대형 연기금 SRI펀드 운용사 선정 |
| | 2007.08 | NH-CA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
| | 2009.01 | 수탁고 10조원 돌파 |
| | 2009.06 | 국내최초 공모 레버리지 펀드 출시 |
| | 2010.01 | 'Amundi자산운용'으로 재출범 (모회사인 Credit Agricole과 Societe Generale의 자본출자) |
| | 2010.01 | "1.5배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 금융감독원 선정 2009년 '최우수 금융신상품상' 수상 |
| | 2012.03 | 'NH농협금융지주'로 새롭게 출범 (모회사인 농협중앙회가 7개의 금융자회사로 구성) |
| | 2015.08 |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 2015.10 | 대체투자 사업 진출 |
| | 2016.05 | NH-CA자산운용(주)에서 NH-Amundi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
| | 2017.07 | 모회사인 Amundi의 Pioneer(파이오니어) 인수 완료 : 자산규모 1,600조원의 글로벌 Top8 운용사로 발돋움 |
| | 2018.02 | 공무원연금공단 '사회책임투자형' 우수운용사 선정 |
| | 2018.03 | HANARO ETF 출시 |
| | 2018.11 | 사모 헤지펀드 출시 |
| | 2018.12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 | 2019.02 | KG제로인 2019 대한민국펀드어워즈 '대상' 수상 |

| | | |
|------|--------------------|--|
| | 2019.02 2022.01 | 매일경제 2019 매경증권대상 '펀드부문 대상' 수상 수탁고 50조원 돌파 |
| 자본금 | 400억 | |
| 주요주주 | 농협 60%, Amundi 40% | |

나. 주요 업무

(1) 집합투자업자 업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등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집합 투자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 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펀드파트너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

| 재무상태표 | | | 손익계산서 | | |
|----------|----------|----------|-------|----------|----------|
| 항 목 | '24. 12말 | '23. 12말 | 항 목 | '24. 12말 | '23. 12말 |
| 현금 및 예치금 | 75,038 | 73,831 | 영업수익 | 92,492 | 86,309 |
| 유가증권 | 60,411 | 51,474 | 영업비용 | 55,689 | 50,796 |
| 유형자산 | 1,226 | 1,369 | 영업이익 | 36,803 | 35,513 |
| 기타자산 | 26,297 | 23,521 | 영업외수익 | 712 | 517 |
| 자산총계 | 162,972 | 150,195 | 영업외비용 | 292 | 362 |
| 예수부채 | | | 법인세 | 7,225 | 9,113 |
| 기타부채 | 22,842 | 20,600 | 당기순이익 | 29,998 | 26,555 |
| 부채총계 | 22,842 | 20,600 | | | |
| 자본금 | 40,000 | 40,000 | | | |
| 이익잉여금 | 100,130 | 89,595 | | | |
| 자본총계 | 140,130 | 129,595 | | | |

라. 운용자산 규모

[2025.07.09 현재 / 단위 : 억원]

| 구분 | 증권집합투자기구 | | | | | | |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 단기금융 | 총 계 |
|-----|----------|---------|-------|-----|--------|--------|----|-------------------|---------------------|---------------------|---------|---------|
| |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 계약형 | 재간접형 | 파생형 | 기타 | | | | | |
| 수탁고 | 26,055 | 100,197 | 4,743 | 0 | 25,290 | 53,882 | 0 | 10,199 | 65,565 | 7,193 | 155,870 | 448,993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1) 회사 개요

| | |
|-----------------|---|
| 회사명 | 한국증권금융(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10 02-3770-8800 |
|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 www.ksfc.co.kr |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2)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 | |
|------------------------|---------------------------------------|
| 회사명 | 신한펀드파트너스(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02-2180-0400 |
|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 www.shinhanfundpartners.com |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2)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KIS자산평가 | 한국자산평가 | NICE피앤아이 | 에프엔자산평가 | 이지자산평가 |
|----------------------|---|-------------------------------|------------------------|----------------------------|-----------------------------|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빌딩 4층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1층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2층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
| 연락처 | 02-3215-1400 | 02-399-3350 | 02-398-3900 | 02-721-5300 | 02-785-1410 |
| 설립일 | 2000. 6. 20. | 2000. 5. 29 | 2000. 6. 16 | 2011. 6. 9 | 2020. 6. 19 |
|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www.bond.co.kr | www.koreaap.com | www.nicepricing.co.kr | www.fnpricing.com | www.egap.co.kr |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NH-Amundi 법인MMF 5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 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함) 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함)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규약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합투자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65일 동안 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 기간 동안 보수율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수율을 적용합니다.

2. 보상기간: 365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3. 지급시기: 변경일 전일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주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인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 135 조제 2 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 87 조제 8 항제 1 호·제 2 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권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말일

-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이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집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법시행령 제27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광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광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회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 제 7 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 이해관계인 | | 거래의 종류 | 자산의 종류 | 거래 금액 |
|-------------|------|--------|--------|---------|
| 성명(상호) | 관계 | | | |
| 신한은행(CD/CP) | 수탁회사 | 위탁거래 | CP | 346,874 |

- ※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시행령 제 84 조)
-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 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 구분 | 내용 |
|----------|---|
| 투자증권거래 | 1)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 마케팅 비용 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 등) ⑤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됨 |
| 장내파생상품거래 |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주)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 용 어 | 내 용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기준가 산정 통화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재산을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폐쇄형 |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단위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클래스별로 달리 적용하는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이자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및 추가 불입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을 유지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

| 용 어 | 내 용 |
|--------|--|
| |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p>벤치마크(Benchmark, BM)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 등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p> <p>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p> |
| 참조지수 | 비교지수와는 다르게 해당 투자신탁의 단순 성과비교시 참조를 위한 것으로서, 해당 투자신탁이 반드시 참조지수와 유사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자에게 참조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레버리지효과 | <p>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p> <p>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p> |